

## 2015년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

2015년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5조 및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5년 2월 17일

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장

### 1 선발인원 및 응시자격

#### 가. 선발인원 및 응시자격

구분	직렬	직류(분야)	직급	선발예정인원	학력 및 자격		
<b>총 계</b>				<b>2,447</b>			
<b>행정직군</b>				<b>1,296</b>			
공개경쟁 임용시험	행정	일반행정	7급	65	제한없음		
		일반행정(장애인)	7급	7			
		일반행정	9급	727			
		일반행정(장애인)	9급	137			
		일반행정(저소득층)	9급	104			
		일반행정(시간선택제)	9급	136			
	세무	지방세	9급	56			
		지방세(장애인)	9급	10			
		지방세(저소득층)	9급	8			
		지방세(시간선택제)	9급	8			
	전산	전산	9급	12		기술사 : 컴퓨터시스템응용, 정보통신, 정보관리 기사 : 전자계산기, 정보통신, 정보처리, 전자계산기조작응용 산업기사 : 전자계산기제어, 정보통신, 사무자동화, 정보처리 기타 :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	
		전산(장애인)	9급	2			
		전산(저소득층)	9급	2			
		전산(시간선택제)	9급	4			
	사서	사서	9급	2		1·2급 정사서, 준사서	
	방호	방호	9급	12		제한없음 <※ 방호직렬 신체조건 참조(5쪽)>	
		방호(저소득층)	9급	1			
		경비	9급	3			
	<b>기술직군</b>					<b>612</b>	
	공업		일반기계	7급		7	제한없음
일반기계			9급	26			
일반기계(장애인)			9급	7			
일반기계(저소득층)			9급	6			
일반기계(시간선택제)			9급	8			
일반전기			7급	9			
일반전기(장애인)			7급	1			
일반전기			9급	45			
일반전기(장애인)			9급	11			
일반전기(저소득층)			9급	11			
일반전기(시간선택제)			9급	14			
일반화공			7급	2			
일반화공			9급	10			
일반화공(장애인)			9급	3			
일반화공(저소득층)	9급	3					
일반화공(시간선택제)	9급	4					

구분	직렬	직류(분야)	직급	선발예정인원	학력 및 자격
공개경쟁 임용시험	농업	일반농업	9급	3	제한없음
		일반농업(장애인)	9급	1	
		일반농업(저소득층)	9급	1	
		축산	9급	4	
	녹지	산림자원	9급	16	
		산림자원(저소득층)	9급	5	
		산림자원(시간선택제)	9급	4	
		조경	7급	5	
		조경	9급	17	
		조경(장애인)	9급	5	
		조경(시간선택제)	9급	4	
	보건	보건	9급	6	
		보건(장애인)	9급	1	
		보건(저소득층)	9급	1	
	시설	일반토목	7급	14	
		일반토목(장애인)	7급	1	
		일반토목	9급	100	
		일반토목(장애인)	9급	23	
		일반토목(저소득층)	9급	23	
		일반토목(시간선택제)	9급	24	
		건축	7급	7	
		건축	9급	37	
		건축(장애인)	9급	9	
		건축(저소득층)	9급	7	
		건축(시간선택제)	9급	10	
	방재안전	방재안전	7급	4	
		방재안전	9급	10	
	방송통신	통신기술	9급	5	
		통신기술(장애인)	9급	2	
		통신기술(저소득층)	9급	2	
		통신기술(시간선택제)	9급	2	
	시설관리	시설관리	9급	65	
시설관리(장애인)		9급	8		
시설관리(저소득층)		9급	9		
시설관리(시간선택제)		9급	10		
경력경쟁 임용시험	<b>기술직군</b>			<b>539</b>	
	수의	수의	7급	5	수의사
	의료기술	임상병리	9급	10	임상병리사
		방사선	9급	10	방사선사
	약무	약무	7급	6	약사
		약무(시간선택제)	7급	4	
	간호	간호	8급	130	간호사
		간호(시간선택제)	8급	28	

구분	직렬	직류(분야)	직급	선발예정인원	학력 및 자격
경력경쟁 임용시험	시설	지적	7급	4	지적 기사 이상
		지적	9급	26	지적 산업기사 이상
		지적(장애인)	9급	3	
	운전	운전	9급	134	1종 대형운전면허
		운전(시간선택제)	9급	16	
	공업	일반기계(고졸자)	9급	18	※ 응시자격 및 추천절차 등 세부적인 채용내용은 7월 중 별도 공고예정
		일반전기(고졸자)	9급	32	
		일반화공(고졸자)	9급	8	
	농업	일반농업(고졸자)	9급	2	
		축산(고졸자)	9급	1	
	보건	보건(고졸자)	9급	4	
	시설	일반토목(고졸자)	9급	68	
		건축(고졸자)	9급	25	
	방송통신	통신기술(고졸자)	9급	5	

## 나. 공통응시자격

### ○ 응시연령

- 7급 : 20세 이상(199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)
- 8·9급 : 18세 이상(199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)

### ○ 거주지 : 제한없음

### ○ 응시결격사유 등(적용기준일 :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)
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, 「지방공무원법」 제66조(정년)에 해당되는 자 또는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등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

#### ▶ 지방공무원법 제31조(결격사유)

-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
※개정된 민법 시행(2013.7.1.)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.6.30.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.
-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-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(횡령, 배임) 및 제356조(업무상의 횡령과 배임)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#### ▶ 지방공무원법 제66조(정년)

-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.
-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,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.

- 장애인 응시자는 행정업무 수행능력이 있는 자
- 원서접수시에는 자격증, 면허증을 취득하지 못하였어도 당해 시험의 면접 시험 최종일까지 자격증, 면허증 취득이 확실시 되는 경우 응시 가능

#### 다. 고교졸업자 구분모집 응시대상자

고교졸업자 구분모집의 경우 응시자격, 추천절차 등 세부적인 채용내용은 7월 중 별도 채용 공고 예정

#### 라.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

-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
-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, 상이등급기준에 해당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·결정되어 있어야 함
-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외의 다른 모집단위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(단,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)
- 응시대상자의 증빙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함

#### 마.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

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해당하는 기간(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로 봄)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자
- 군복무(현역, 대체복무)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(보호)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(보호대상자)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(보호대상자)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(다만,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)
  - ※ 군복무자가 군복무 전·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(보호대상자)였다면 군복무기간 동안 수급자(보호대상자) 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봄
- 저소득층은 저소득층 구분모집 외의 다른 모집단위에도 비저소득층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(단,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)
-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·군·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 증명서(수급기간 명시), 한부모가족증명서(보호기간 명시)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

**바. 시간선택제 구분모집 응시대상자(행정자치부 지침 적용)**

- 일반 공무원의 통상적 근무시간(1일 8시간, 주 40시간)보다 짧게 근무(1일 4시간, 주 20시간, 근무시간 별도 지정)할 것을 예정하는 자
  - 승진 : 승진가능 계급은 제한없음 ※ 과장,출장소장,사무소,관리소장 관리직위에 보직불가
  - 보수,연금 :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보수지급, 국민연금 우선 적용

**사. 방호직렬 신체조건**

구분	내용 및 기준
체격	「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」에 따른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팔다리가 완전해야 한다.
시력	두 눈의 시력(교정시력을 포함한다)이 각각 0.8 이상이어야 한다.
청력	청력이 정상[좌우 각각 40데시벨(dB)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]이어야 한다.

**2 시험과목**

○ 행정직군

구분	직렬·직류	직급	시 험 과 목
행정직군	일반행정직 (장애인, 저소득, 시간선택제 포함)	7급	필수(6) : 국어(한문 포함), 영어, 한국사, 헌법, 행정법, 행정학 선택(1) : 경제학원론, 지방자치론, 지역개발론
		9급	필수(3) : 국어, 영어, 한국사 선택(2) : 행정법 총론, 행정학 개론(지방행정 포함), 사회, 과학, 수학
	지방세직 (장애인, 저소득, 시간선택제 포함)	9급	필수(3) : 국어, 영어, 한국사 선택(2) : 지방세법, 회계학(회계원리, 원가회계 및 정부회계는 반드시 포함), 행정학개론(지방행정 포함), 사회, 과학, 수학
	전산직 (장애인, 저소득, 시간선택제 포함)	9급	필수(5) : 국어, 영어, 한국사, 컴퓨터일반, 정보보호론
	방호 (방호경비) (방호직류 저소득포함)	9급	필수(3) : 국어, 한국사, 사회
	사서직	9급	필수(3) : 국어, 영어, 한국사 선택(2) : 자료조직개론, 정보봉사개론, 사회, 과학, 수학, 행정학개론(지방행정 포함)

○ 기술직군

구분	직렬·직류	직급	시 험 과 목
기술직군	일반기계	7급	필수(7) : 국어(한문 포함), 영어, 한국사, 물리학개론, 기계공작법, 기계설계, 자동제어
	일반기계 (장애인, 저소득, 시간선택제 포함)	9급	필수(5) : 국어, 영어, 한국사, 기계일반, 기계설계
	일반기계 (고졸자)	9급	필수(3) : 물리, 기계일반, 기계설계
	일반전기 (장애인 포함)	7급	필수(7) : 국어(한문 포함), 영어, 한국사, 물리학개론, 전기자기학, 회로이론, 전기기기
	일반전기 (장애인, 저소득, 시간선택제 포함)	9급	필수(5) : 국어, 영어, 한국사, 전기이론, 전기기기
	일반전기 (고졸자)	9급	필수(3) : 물리, 전기이론, 전기기기
	일반화공	7급	필수(7) : 국어(한문 포함), 영어, 한국사, 화학개론, 화공열역학, 전달현상, 반응공학
	일반화공 (장애인, 저소득, 시간선택제 포함)	9급	필수(5) : 국어, 영어, 한국사, 화학공학일반, 공업화학
	일반화공 (고졸자)	9급	필수(3) : 화학, 유기공업화학, 무기공업화학
	일반농업 (장애인, 저소득 포함)	9급	필수(5) : 국어, 영어, 한국사, 재배학개론, 식용작물
	일반농업 (고졸자)	9급	필수(3) : 생물, 식용작물, 농업생산환경
	축산	9급	필수(5) : 국어, 영어, 한국사, 가축사양, 가축육종
	축산 (고졸자)	9급	필수(3) : 축산, 가축사양, 초지
	산림자원 (저소득, 시간선택제 포함)	9급	필수(5) : 국어, 영어, 한국사, 조림, 임업경영
	조경	7급	필수(7) : 국어(한문 포함), 영어, 한국사, 조경계획 및 설계, 조경사 및 이론, 조경재료 및 시공, 생태계관리 및 식물
	조경 (장애인, 시간선택제 포함)	9급	필수(5) : 국어, 영어, 한국사, 조경학, 조경계획 및 생태계관리
	보건 (장애인, 저소득 포함)	9급	필수(5) : 국어, 영어, 한국사, 공중보건, 보건행정

구분	직렬·직류	직급	시 험 과 목
기술직군	보건 (고졸자)	9급	필수(3) : 생물, 환경보건, 공중보건
	일반토목 (장애인 포함)	7급	필수(7) : 국어(한문 포함), 영어, 한국사, 물리학개론, 응용역학, 수리수문학, 토질역학
	일반토목 (장애인, 저소득, 시간선택제 포함)	9급	필수(5) : 국어, 영어, 한국사, 응용역학개론, 토목설계
	일반토목 (고졸자)	9급	필수(3) : 물리, 응용역학개론, 측량
	건축	7급	필수(7) : 국어(한문 포함), 영어, 한국사, 물리학개론, 건축계획학, 건축구조학, 건축시공학
	건축 (장애인, 저소득, 시간선택제 포함)	9급	필수(5) : 국어, 영어, 한국사, 건축계획, 건축구조
	건축 (고졸자)	9급	필수(3) : 물리, 건축계획, 건축구조
	방재안전	7급	필수(7) : 국어(한문 포함), 영어, 한국사, 재난관리론, 안전관리론, 도시계획, 방재관계법규
	방재안전	9급	필수(5) : 국어, 영어, 한국사, 재난관리론, 안전관리론
	통신기술 (장애인, 저소득, 시간선택제 포함)	9급	필수(5) : 국어, 영어, 한국사, 통신이론, 전자공학개론
	통신기술 (고졸자)	9급	필수(3) : 물리, 전자공학개론, 유선공학개론
	시설관리 (장애인, 저소득, 시간선택제 포함)	9급	필수(3) : 국어, 한국사, 사회
	수의	7급	필수(2) : 수의미생물학, 수의보건학 선택(1) : 수의전염병학, 수의생리학, 수의병리학, 수의약리학, 수의기생충학
	임상병리	9급	필수(3) : 생물, 공중보건, 의료관계법규
	방사선	9급	
	약무 (시간선택제 포함)	7급	필수(2) : 화학개론, 약제학 선택(1) : 약전학, 약물학
	간호 (시간선택제 포함)	8급	필수(3) : 생물, 간호관리, 지역사회간호
	지적	7급	필수(2) : 지적학, 행정법 선택(1) : 지적측량학, 지적법규
	지적 (장애인 포함)	9급	필수(3) : 수학, 지적측량, 지적법규
	운전 (시간선택제 포함)	9급	필수(2) : 사회, 자동차구조원리 및 도로교통법규

- 9급 선택과목 중 고교이수과목 출제범위
  - 사회 : 법과 정치, 경제, 사회·문화
  - 과학 : 물리 I, 화학 I, 생명과학 I, 지구과학 I
  - 수학 : 수학(고교 1학년 과정), 수학 I, 미적분과 통계 기본
-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의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점수를 적용(지방공무원임용령 제50조의2 참조)

### 3 시험실시방법

#### 가. 공개경쟁임용시험 및 경력경쟁임용시험 중 수의·의료기술·약무·간호·지적·운전직

- 제1·2차 시험(병합실시) : 선택형 필기시험
  - 매 과목당 100점 만점, 4지택1형 20문항, 1문항당 1분 기준
- 제3차 시험 : 면접시험
  - 제1·2차 시험에 합격한 자만 제3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

#### 나. 경력경쟁임용시험 중 고졸자 구분모집 채용

- 제1·2차 시험(병합실시) : 선택형 필기시험
  - 매 과목당 100점 만점, 4지택1형 20문항, 1문항당 1분 기준
- 제3차 시험 :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
  - 서류전형 : 제1·2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해 응시자격 적격 심사

### 4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일정

응시원서접수	필기시험			인적성검사 및 면접시험			
	시험장소 공고일	시험일	합격자 발표일	시험장소 공고일	인적성검사	면접시험	합격자 발표일
2015.3.16.(월)~ 3.20.(금) (취소마감일 : 3.27.(금) 18:00)	5.29.(금)	6.13.(토)	8.28.(금)	8.28.(금)	9.12.(토)	10.19.(월) ~ 10.30.(금)	12.4.(수)

-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 일정과 합격자 명단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(<http://www.seoul.go.kr>) 및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홈페이지(<http://hrd.seoul.go.kr>), 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센터(<http://gosi.seoul.go.kr>)에 공고함
-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일 전 인적성검사를 실시하며 인적성검사에

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함(인적성검사에 불참시 면접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며 불합격 처리됨)

- 필기시험 성적은 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센터(<http://gosi.seoul.go.kr>)를 통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며, 본인에 한하여 확인할 수 있음
  - 필기시험 불합격자 성적 안내 :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간
  - 필기시험 합격자 성적 안내 :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1개월간

## 5 응시원서 접수(인터넷 접수만 가능)

가. 접수방법 : 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센터(<http://gosi.seoul.go.kr>)에 접속하여 접수

나. 접수시간 : 접수기간내 24시간(단, 시작일(3.16)은 09:00부터, 마감일(3.20)은 18:00까지)

※ 문의사항은 09:00부터 18:00까지 전화 응대 안내함

다. 응시수수료 : 7급 7,000원 / 8-9급 5,000원

※ 수수료 결제 방법에 따른 별도의 처리비용(휴대폰 결제, 카드 결제, 계좌이체 비용) 소요됨

※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, 응시원서 접수시 저소득층 대상여부 조회 동의 및 반환계좌를 등록하여야 함(별도의 처리비용은 반환되지 않음)

### 라. 유의사항

- 응시원서 접수시 사진파일(해상도 100dpi이상, 3.5cm×4.5cm)이 필요하며, 배경이 있는 사진, 스냅사진, 상반신 전체가 나온 사진, 얼굴이 잘려 나오거나 작아서 식별이 곤란한 사진 등은 사용할 수 없음
-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 및 가산특전 관련 증빙에 관한 사항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안내함
-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중복지원, 자격 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
  - ※ 저소득층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원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원서접수가 무효 처리되고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니 저소득층 해당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
-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(선택과목, 사진 등)을 수정할 수 있으나, 접수기간 이후에는 수정 불가(다만, 모집단위를 변경할 경우에는 취소 후 다시 접수하여야 함)
-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(접수 취소기간 : '15. 3.27(금) 18시까지) 내에 한하여 원서접수 철회시 응시수수료를 환불함

- 서울시에서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시험에는 복수로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없음
  - 장애인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
- ※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기준 및 절차, 구비서류 등은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서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

## 6 장애인 및 저소득층 초과합격제

- 가. 대 상 :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
- 나. 실시방법 : 일반모집 동일 직류 합격선 이상 점수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당초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필기시험에 합격시킬 수 있음

## 7 양성평등임용목표제

- 가. 대 상 : 공개경쟁임용시험 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(시간선택제는 10명) 이상인 모집단위
  - 나. 실시방법 : 어느 한 성(性)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에서 40%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득점이 합격선 -3점 이상인 해당 성(性)의 응시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미달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로 합격 처리함
- ※ 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(性)의 응시자를 추가로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(性)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님

## 8 가산특전

- 가. 취업지원대상자(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)
  -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,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,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3조, 「5.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20조,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및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필기시험의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(10% 또는 5%)을 가산함

-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%를 초과할 수 없음 (직급별·직류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않음) 단, 응시 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

※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,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등에 확인하여야 함

**나. 자격증 소지자(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)**

- 국가기술자격법령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한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각 과목에서 40%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그 시험과목 만점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다음 표에 의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가산함
- 다음의 1), 2), 3)항 자격증 가산점수는 공통적용 자격증 1개, 직렬별 자격증 (행정·기술직군분야) 1개를 각각 인정하여 합산함(단, 각 항별 자격증이 2개 이상인 경우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인정)

**1) 공통적용 자격증 가산비율(전산직을 제외한 모든 직렬 해당)**

직 급	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	
	1%	0.5%
7급	정보관리기술사,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,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	사무자동화산업기사,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, 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2급
8·9급	정보관리기술사,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,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,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, 컴퓨터활용능력 1급	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워드프로세서(구 워드프로세서 1급) 컴퓨터활용능력 2급

**2) 행정직군 및 보건·의료기술직렬의 자격증 가산비율**

직 렬	직 류	직 급	대 상 자 격 증	가산비율
행 정	일반행정	7·9급	변호사, 변리사	5%
세 무	지방세	9급	변호사, 공인회계사, 세무사	
보 건	보 건	9급	임상심리사1급, 임상심리사2급	

**3) 기술직군의 자격증 가산비율(수의, 의료기술, 약무, 간호, 지적, 운전직 제외)**

구 분	7급		9급	
	기술사, 기능장, 기사	산업기사	기술사, 기능장, 기사, 산업기사	기능사
가산비율	5%	3%	5%	3%

※ 기술직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서울특별시인사규칙 제17조 별표6에 의함 : [붙임 1] 참조

※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자격으로 인정함

**다. 위의 ‘가’항과 ‘나’항 가산점은 각각 적용 합산함**

라.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,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일을 포함한 5일 이내(2015.6.13.~6.17.)에 인터넷원서 접수센터(<http://gosi.seoul.go.kr>)에서 자격증의 종류(가산비율) 및 자격번호(보훈번호)를 입력하여야 함(OMR 답안지의 가산점 표기란은 폐지)

※ 가산특전 자격증을 잘못 입력 또는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

## 9 기타사항

- 모집단위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
-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미충족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됨
-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필기시험 성적이 높은 순서대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
- 근무지역은 서울특별시 및 종로구 등 25개 자치구임
- 안정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공개경쟁임용시험 최종합격자는 임용 후 3년간, 경력경쟁임용시험 최종합격자는 임용 후 4년간 타 사·도, 중앙부처 등 인사교류(전출)를 금지함(※서울특별시에 신규 임용된 자에 한함)
-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제13조의2 제1항의 임용유예 사유 중 ‘학업의 계속’을 사유로 한 임용유예는 인력운영 사정상 허용되지 않을 수 있음
- 응시자는 응시표, 답안지, 시험시간 및 시험장소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,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음
-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)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,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
- 필기시험일 시험종료 후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 문제 및 정답가안을 공개하고 정답이의제기에 대하여 안내함
- 필기시험에서 과락(만점의 40% 미만)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,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을 참고하기 바람
-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시에는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공고함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공개채용팀 ☎(02)3488-2321~6으로 문의

## 2015년부터 달라지는 시험제도

### ● 고졸채용 모집단위 전국 확대 및 시험일정 변경

- ① 모집단위 : 전국으로 확대
  - 기존) 서울시 내 특성화고·마이스터고 ⇒ **변경) 국내 특성화고·마이스터고**
- ② 필기시험일정 변경 : 전국 고졸채용 일정과 동일하게 추진('15.10.17)
  - 기존) 서울시 7·9급 시험일정과 동일(매년 6월 경)
  - **변경) 전국 고졸채용 일정과 동일하게 추진**

응시원서접수	필기시험			인적성검사 및 면접시험			
	시험장소 공고일	시험일	합격자 발표일	시험장소 공고일	인적성검사	면접시험	합격자 발표일
2015.8.24.(월) ~ 8.26.(수)	10.2.(금)	10.17.(토)	11.11.(수)	11.11.(수)	11.28.(토)	12.9.(수)	12.22.(화)

※ 상기일정은 서울시 인력충원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### ● 신규임용자 전문성 강화를 위한 분야별 보직관리 근무제도 실시

- 내 용 :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로 임용 예정 공무원은 일정기간(임용 후 3년 내외) 근무 후 전문분야별로 보직 관리 지정되며 5급으로 승진전까지 개인별 지정된 전문분야에서 근무하여야 함
- 보직관리 : 임용후 3년간 조직 탐색기간을 거쳐 전문분야 지정

5개 직무군	전 문				공 통
	복지·교육	경제·문화	환경·공원	교통·도시안전	
10개 전문분야 1개 공통분야	① 복지·여성 ② 교육	③ 문화 ④ 경제·정보	⑤ 환경 ⑥ 공원 ⑦ 상수도	⑧ 교통 ⑨ 도시안전 ⑩ 도시계획	공통분야 (행정·기획·재무 등)

### ● 운전직렬 응시자격 요건 개선



- 시행일 : 2016년 운전직 신규채용 시부터 적용·시행